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20430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A

변론 종결 2015. 11. 27.

판결 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401,797원 및 그 중 239,166,465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72,357,413원에 대하여는 2013. 11. 18.부터 각 2015. 7.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401,797원 및 그 중 239,166,465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72,357,413원에 대하여는 2013. 11.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소 취하된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25.

개정 ·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5.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강동훈, 판사 박예지

청 구 원 인

1. 구상금 청구

1. 신용보증위탁으로 인한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가, 신용보증위탁으로 인한 신용보증서 발급

원고는 피고 A (D 대표)의 부탁으로 피고 A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피고 A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갑제1-3호증, 이하 제1-3보증이라고 합니다).

(1) 보증서번호 : E

보증일 : 2008. 7. 14.

보증원금 : 170,000,000원

보증기한 : 2013. 7. 12. (2014. 7. 11.로 연장, 갑제1호증의 3)

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 국민은행 길2동지점

(2) 보증서번호 : F

보증일 : 2009. 11. 16.

보증원금 : 85,000,000원 (68,000,000원으로 변경, 갑제2호증의 3)

보증기한 : 2010. 11. 15. (2013. 11. 15.로 연장, 갑제2호증의 3-5)

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 국민은행 길2동지점

(3) 보증서번호 :

보증일 : 2011. 6. 29.

보증원금 : 221,220,000원

보증기한 : 2021. 6. 25.

대출과목 : 기타시설자금대출

대출은행 : 기업은행 끈지압지점

나. 구상관계의 약정

원고는 피고 을 위하여 위 각 신용보증을 하면서, 피고 이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피고 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갑제1-3호증의 각 2),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입니다(갑제6호증).

또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은 제3보증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갑제3호증의 2).

다. 은행의 대출실행

피고 A은 보증일 무렵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100,000,000원, 기업은행으로부터 245,800,000원을 각 대출받았습니다.

2.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피고 A은 2013. 9. 17. 당좌부도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갑제4호증의 1,2),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3. 10. 30. 국민은행에 241,314,785원, 2013. 11. 18. 기업은행에 111,937,320원을 각 변제하였습니다(갑제5호증의 1,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148,320원을 회수하여 제1보증 대위변제금에, 39,579,907원을 회수하여 제3보증 대위변제금에 각 충당하였으므로,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는 311,523,878원입니다.

나. 확정손해금

원고는 위와 같이 금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명칭	대출금액	대출기간		회수	요일	정산금액
E	1,127,240	2013-10-30	2013-10-30	1	12	370
	1,018,210	2013-10-30	2013-11-18	20	12	6,695
	2,870	2013-10-30	2014-03-26	146	12	139
G	10,000,000	2013-11-18	2013-12-10	23	12	75,616
	478,017	2013-11-18	2014-03-20	123	12	19,249

	5,000,000	2013-11-18	2014-05-30	194	12	318,904
	10,000,000	2013-11-18	2014-06-30	225	12	739,726
	14,103,890	2013-11-18	2015-06-26	588	12	2,717,220
총계						3,877,919

3. 소 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A 은 315,401,797원(제1·3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311,523,878원 + 확정손해금 3,877,919원)과 그 중 제1·2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239,166,46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10. 30.부터, 제3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72,357,41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11. 18.부터,

나. 피고 B 은 피고 A 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6,228,128원(제3 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72,357,413원 + 확정손해금 3,870,715원)과 그 중 제3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72,357,41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11.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같은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II. 사해행위취소청구

1. 원고 구상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2)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아래에서 상술함) 이후에 성립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각 성립해 있었고, 피고 A이 2013. 9. 23. 보증사고 발생하여 원고가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고 A의 사해행위

(1) 피고 A은 보증사고 발생 직후 2013. 9. 24.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잘 아는 사이인 피고 C과 대금 6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30. 소유권이 전동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제7호증).

(2) 사해행위 당시 피고 A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만 약 23억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한 반면(갑제4호증의 1,2),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 당시 피고 A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습니다.

(3)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위 피고가 원고 등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잘 아는 사이인 피고 C에게 유일한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피고 A의 행위는 사해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피고 A은 소외 H(피고 C의 부친)과 거래관계에 있는데, 기존거래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 한 것이라고 합니다.

3. 소 결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영양동기소 접수 제 50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